

자원 봉사자 및 후원인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원 활동에 동참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20만 명 수준으로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도 종전의 산재·임금체불 등에서 결혼(혼인신고)·출산 등의 문제로 까지 다양화 되어가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적 문제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저희 <모임>은 지난 92년 5월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상담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관심있는 분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몇몇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급박한 각종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해 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 요청은 나날이 양적·질적인 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지원 활동에 뜻이 있는 분들을 널리 찾기로 하였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상담 활동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간을 넬 수 있고,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동남 아시아쪽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더욱 환영)

한편,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은 <모임>의 활동을 후원해 주시면 어려운 재정 형편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뜻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Tel 02-795-5504 / Fax 02-749-6055

계좌 번호: 상업은행 106-07-052777 박석운/ 국민은행 822-21-0176-154 박석운

뜻있는 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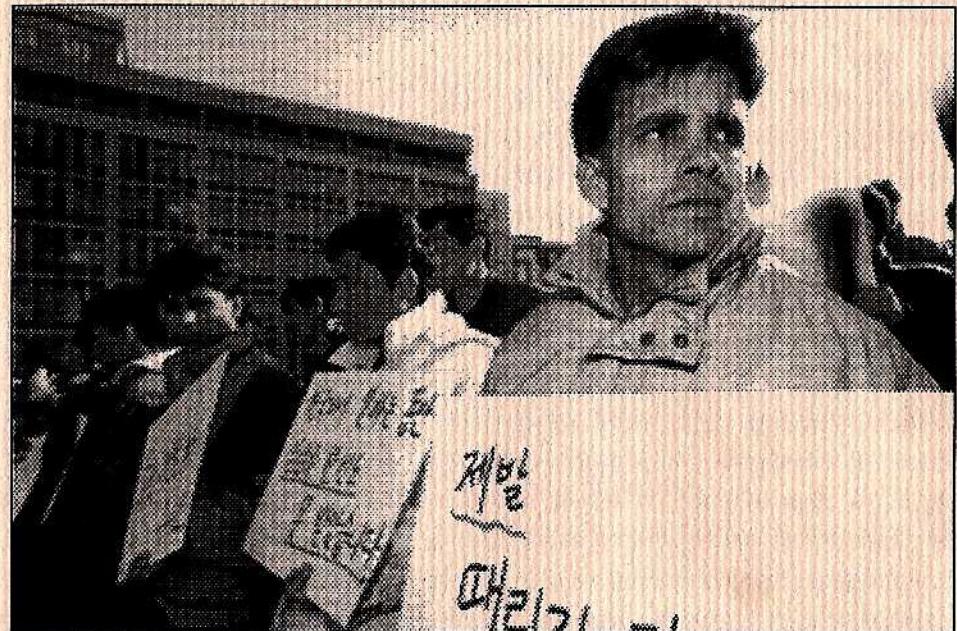
- '전찬 치과 의원' (양천구 목동 405-97 / ☎ 02-645-9746)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작은 세상' (과천 ☎ 02-504-3315)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각종 의복류를 제공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 차지훈, 김창국, 정재성 변호사님께서 각각 10만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장간호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상



- 장간사
- 상담사례
- 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험
- 미국에서의 한인 이주노동자 실태
- 외·노 동향
- 모임 소식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빌딩 3층
전화 02-795-5504

창간사

대표 박석운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2년 5월 말경이었다. 당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던 초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이들을 상담·지원하는 단체도 전무하였던 시절이었다.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필리핀인 노동자들이 특별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집결하던 서울 자양동 성당에서 턱자를 떠놓고 체불임금·산재 등의 상담을 시작하였는데, 초기 멤버는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신윤환 서강대 교수, 설동훈 박사, 서강대 대학원생 김민정씨, 필자 등이 참가하였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의미를 밝히고 바람직한 대책방향을 제시한 모임 취지문은 외국인 노동자 대책활동의 초기문서에 해당하며 초창기 언론이나 사회각계에 이 문제의 접근 방향을 향도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92년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양동 성당에서 상담활동을 진행하다가 이후부터 노동정책 연구소 사무실로 연락처를 옮기고 활동방향도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 사업을 강화하였고, 상담사업은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정도가 되었다. 이후 1993년 9월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교류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또 1994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 및 보호대책 연구와 핸드북 발간”이라는 제목으로 ①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 연구②국내 워크샵 ③국내 공개토론회 ④국제세미나 ⑤외국인 노동자 핸드북 발간 및 ⑥최종보고서 발간의 모두 6단계로 구성된 종합적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상근자가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주 1~2일씩 교대로 나와 상담 지원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는데, 작년(1996) 7월부터는 상근자를 두게 되어 더욱 본격적으로 상담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최초의 결실이 이 회보 빌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채 몇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현재 20만명에 가까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사회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런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사회의 운영에 불가분의 요소로서 기능할 것이고 또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의 상황임이 분명하다. 오랫동안 단일민족사회로 살아온 우리사회가 바야흐로 이제부터 한반도 내에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본격적인 다민족 공생사회로 접어들 역사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상담·지원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5년동안 외국인 노동자 관련 충격적인 사건들과 투쟁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실로 엄청나게 진전되었고 또 상담·지원단체도 수십개로 늘어나는 등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내 체류가 구조화, 일상화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본격적으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새로 발간되는 이 회보가 우리사회의 중대 현안의 하나로 등장한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의 매개가 될 수 있다면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 “함께 어울려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우리사회” 건설을 위해, 작지만 아름다운, 그리고 손이 많이 가지만 보람된 이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상담사례

1년 2개월의 머슴살이

지난 94년 3월, 29세의 이란인 함제는 퇴계원에 있는 한 석재공장을 찾았다. 아직 회사가 개업한 상태는 아니지만 개업하기 위한 준비작업들이 있으니 월 60만원, 3개월 후엔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함제는 그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너달이 지나도 회사는 개업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사장이 약속했던 월급조차 어떤 달은 10만원, 어떤 달은 30만원 하는 식으로 줄 뿐이었다. 함제는 이곳에 더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매번 개업만 되면 ‘그동안 못준 월급은 물론 생활할 수 있도록 방도 하나 마련해 주겠다’는 사장의 말은 그를 다소 안심시켰다.

황량한 벌판에 가건물로 세워진 작은 판잣집. 그곳의 문지기 생활부터 시작된 허드렛일은 풀 만드는 작업부터 이삿짐을 나르는 일까지 온갖 잡일이 모두 그의 몫이 되었다. 그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통제되고 순응하도록 머슴처럼 길들여지고 있었다.

함제가 이 곳에 머문 지 어언 1년 2개월. 드디어 회사는 개업을 했다. 하지만 그의 수중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함제는 다른 일자리를 찾았고 시간이 있을 때면 공장을 찾아가 밀린 임금을 독촉했다.

그렇게 8개월이 흐르고 사장은 함제에게 다시 와서 일을 한다면 월급을 1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이왕이면 그의 곁에서 일하는 것이 밀린 임금을 받기가 더 쉬울 것이라 판단한 함제는 혼쾌히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도 여의치 않아 3개월만에 다시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의 체불 임금에 대해 “너한텐 줄 것 다 줬어”라고 일축해 버리는 사장을 이젠 더이상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함제의 체불임금을 확인하는 상담원에게 “1년 2개월 치의 밀린 임금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를 다시 채용한 것”이라며 오히려 함제의 패سي브를 운운했다.

통화가 있은 다음날, 사장은 그에게 한번 “늘려오라”며 공장방문을 요청했다. 물론 그의 신변보호를 위해 상담원이 동행하기는 했지만 염려한대로 사장의 손은 함제의 얼굴이 확인되는 것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소의 전화번호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팔순이 넘은 함제 부친의 병환으로 이번 주 중으로 출국을 해야했던 그는 이미 비행기 티켓이 있었다.(작년 12월 말까지 불법체류자들이 출국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았음: 편집자주)

혹시나 했던 작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 사업체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또 업주는 이미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벌금을 한차례 물은 터라 노동부로의 진정은 별 효과를 갖지 못했다. 결국 함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말을 뒤로 한 채….

도둑을 만든 공장

“팩스 머신 훔쳤어요?”

“사장님도 내 지갑 가져갔어요.”

“공장장이 이쯤한테 맞아서 병원 다녔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 사람한테 맞았어요.”

.....

체불 임금 65만원을 받지 못해 상담소를 찾은 이집트인 이샘.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이상 없었다. 1개월 전이나 접수받았던 문제임에도 이제서야 그를 불러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회사측과의 통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간신히 통화가 된 바로 그 며칠 사이 일은 저질러졌고 전세는 역전돼 버렸다.

“일을 했는데 왜 돈을 안 주겠어. 고기도 사주고 춥다 해서 이불도 사 주고 우리가 얼마나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 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도둑질을 해? 돈받고 싶으면 회사로 오라고 해. 당장 현행범으로 고소할 테니”

.....

체불 임금을 받으려 때로는 사정도, 때로는 언쟁도 해보았던 이샘. 그러나 그날은 결국 참다못해 팩스를 등에 지고 나와 버렸다. “돈 없어”라는 말 한 마디만 남기고 매번 훌쩍 나가 버리는 사장을 보며 ‘혹시 팩스라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단지 그뿐이었다. 자신이 일한 월급을 받고 싶어서.

후에 이 사실을 안 회사측은 허겁지겁 그를 찾아 나섰고 경찰의 개입을 두려워한 공장 주변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이샘의 거처는 쉬 밝혀졌다. 그리고 세 사람의 한국인과 이샘의 몸싸움. 물론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를 현행범으로 고소하지 못했다. 자신들 역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샘이 진정서를 작성해 놓고 노동부로 향하려던 그날, 회사측과 마지막으로 확인된 사실들이다. 품위와 양심을 논하며 격있는 자세로 상담원을 대했던 그들의 hidden card는 너무도 야비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인 설득뿐이었다. 이샘의 죄를 탓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인식시키며 끈질기게 전화를 하던 우리에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월급은 주는데 공장장의 15일치 병원치료비 빼고 그리고 지금 후에 이샘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을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상담원이 지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기꺼이 주겠다”는 것. 쉬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엔 틀림없다. 허나 그들이 이렇게라도 결정한 걸 보면 임금을 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듯 싶고 다만 얼마라도 받아 보려는 마음에 며칠후 각서를 쓰겠다는 전화를 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팩스 사건이 일어나기 전처럼 또다시 사장은 부재중이고 통화는 거부되고 있다. 결국 이샘은 떠났다. “나 팩스 머신 돌려줬어요. 나 도둑 아니에요”라는 말만 반복한 그.

낯선 이국 땅에서 말 한마디 안통하는 그들과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 그가 얻어간 것은 도둑이라는 죄명.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우리에게 “놀러오라”며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던 그의 힘없는 목소리가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했다.

.....

지난 1월 초순 체불임금 문제로 우리를 찾아왔던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함께 진정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로 출석한 일이 있었다. 그 곳에서 맨 먼저 우리를 맞은 것은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라는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입가에 미소였다.

나는 그 따뜻함에 적지 않은 충격을 느껴야 했다. 그때까지 노동부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한 서영택 근로감독관 역시 친절하고 시원시원하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비록 회사측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노동부 사무소 문턱이 높아 보이기만 했던 나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그의 푸근한 태도가 문제해결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었다. 그래서였을까. 갑자기 함께 온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 우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또다른 체불임금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마침 그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의 관할구역이어서 회사측과 연락이 되었고 우리는 몇시간 후에 그곳의 생산부장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생산부장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뜸 반말을 해대었다. 순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근로감독관은 그의 그런 언행을 크게 꾸짖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좋은 게 없어요’라고 따끔한 충고까지 해주었다. 이때까지 품어왔던 노동부, 나아가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장면이었다.

이윽고 회사로 가서 사장과 얘기를 나눴고 외국인 노동자와 사장은 서로 거짓말을 한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사장의 입에서는 ‘야 이새꺄! 너 계속 거짓말 할래’라는 욕이 나왔다. 참다 못한 외국인 노동자는 근로감독관의 친절함에 큰 힘이라도 얻은 듯 ‘새꺄 새꺄 하지 마세요’라고 당당하게 힘주어 말했다. 결국 둘은 좀더 얘기를 나눈 후에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부장이 담당했던 일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 사장이 모르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사장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돈을 줘야지’ 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했다.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를 여느 노동자와 다름없이 대해주는 노동부의 몇몇 근로감독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려는 외국인 노동자, 그들을 생각하며 나는 돌아오는 길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다.

‘불법’, ‘외국’이라는 뿌리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노동자’에 대한 오만한 우월감에 도취되어, 한 인간에게 부당한 대우를 너무도 자연스레 행하고, 나아가 그것을 악용하여 자기집단의 이익을 쟁기는 자들 앞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이다.

허물어진 꿈을 갖고서 (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험)

나의 친구가 어느 날 말했다. “일년 전에 한국으로 오면서 계획했던 어떤 일도 이를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심지어 나의 건강도.” 와자니, 28세 모로코 출신인 그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한 돈을 가급적 빨리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반대였다. 그는 현재 산재로 손을 다친 후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있다. 와자니는 “돈을 얼마 받든지에 상관없이 나를 둘러처럼 대하지 않고 친절히 대해주는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단 3주 이상이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상황이다.

요르단에서 온 J. S.는 이렇게 말했다.

“최악의 대접! 나는 이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내 인생 최악의 대접을 받았다.”

그는 회사에 있는 조그마하고 추운 방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게 휴일도 수당도 주지 않았고,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집 지키는 개보다도 못하게 대했다!”

요르단 사람인 발삼과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한 인천의 공장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내가 받아야 마땅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며칠 전 친구와 나는 돈을 받으려고 그 공장을 찾았다. 그 누구도 그 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 못했을 것이다. 내 친구는 정신없이 맞았고 나는 코뼈가 부러졌다. 출입국관리소로 잡혀가 강제출국을 당할까봐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이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한국말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 수첩에는 월차 및 연차휴가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다. ‘사용자는 1주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한 1년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10일간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상일 따름이다. 일당을 받는 것은 사장의 기분과 태도에 달렸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엄연한 벽이 존재하고 있다. 아주 값비싼 깨달음이다.

내 생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실례를 하나 들겠다. 20인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천안 소재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발생한 일이다. 리비아에서 온 유니스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싸웠지만 결국에는 받아야 할 돈의 반밖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차별대우 금지에 대해 핸드북에는 ‘고용자가 성별, 국적,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대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한국내 사업장의 90% 이상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100만원의 임금과 다른 권리가 별도로 주어진다. 외국인 노동자는 반 이하의 월급을 받는다. 한국 노동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일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불량한 곳에서만 일한다.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 더욱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우리는 해고된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한국에는 18만 명을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결정을 꼭 지어야한다.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계속 원한다면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열악한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 위 글을 기고한 사람은 요르단 출신의 노동자로 전직기자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한인 이주노동자 실태

- 요식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

남가주 한인 노동 상담소 (Korean Immigrant Workers Advocates. 이하 KIWA라 한다)는 한인타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4년전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한인상담소의 사업은 사회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한인 사회 내의 전보석 후원층을 넓히고 조직화, 상담, 교육하는 일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접수된 상담의 50%정도가 요식업체의 노동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요식업체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인타운내의 요식업체 상황을 알아본다.

현재 한인타운 내에는 300여 개의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이 곳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인과 라틴계인이고 그 수가 2000여 명에 이른다.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의 어느 분야보다도 식당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루 12~14시간, 주 6일 또는 7일 근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로스엔젤레스의 더운 기후에, 요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가스불의 뜨거움을 견뎌야 하고 꽉 막힌 주방에서 비지땀 흘리며 노동하고 있다. 작업환경이 이러함에도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이 넘어까지 일한 대가로 요리사나 요리사 보조는 일

고용주들이 종업원에게 사전 통보나 이유 없이 그들을 해고시키기까지 한다. 더 심한 경우 일부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주장한 종업원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의 권리 주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기본권을 주장한 종업원이 어느 곳에서도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미 정부의 노동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왜 이렇게 많은 식당 주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몇몇의 고용주들이 해당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 감독기관의 법위반 감시가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인업소에서 노동법 위반이 횡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체불임금 분쟁의 경우 노동자가 승소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을 집행할 확실한 규정이 없어서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위해 싸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노동자들 스스로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KIWA는 이주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만약 한국인이 계속 이들을 착취, 악용하면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얻은 어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은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며, 한인 사회의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외·노동향

I. 경북, 업체 부도 등으로

외국인 취업자 임금 못 받아

구미 중부산업관리공단은 구미공단내 각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236명 중 21.6%에 이르는 51명이 취업한 업체의 부도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분 한족(漢族)인 이들은 현지법인을 통해 취업을 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조합 협동중앙회 등을 통한 재취업이 불가능, 귀국을 해야하나 체임으로 여비마저 마련하지 못해 빌이 뜯여있는 실정이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섬유경기 등이 갈수록 악화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체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행정당국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96/12/1: 경향)

II. 재외동포지원 배경,

‘동족 사기’ 오명 씻기 간급처방

정부가 4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조선족 동포에 대한 사기피해를 막고 조선족사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처방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조선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동포사회에서 반한감정이 고조돼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게 되고 나아가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대남 선전전에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산업연수생은 8만여 명으로 이 중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일천여 명이며, 불법체류자는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형사부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민족 서로 돋기 운동본부’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 9백90건을 분석한 결과 총 피해자 9천7백여 명에 피해금액이 7억여 원이라

고 밝혔다. 사건들을 유형별로 보면 초청사기가 3백15건, 취업사기 1백 35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이밖에 차용(借用)사기·위장결혼사기·임금체불 등이었다.

정부는 조선족 동포 관련 대책으로 일차적으로는 ◆조선족 동포의 국내방문 요건 완화 및 산업기술연수생 배정규모 확대 ◆조선족 사회에 대한 경제 및 문화지원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조선족에 대한 지원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색출 엄격화 ◆불법체류 교사·알선자 및 불법취업 고용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96/12/05: 한겨레)

III. 외국 인력송출업체 국내사무소 산업연수생 임금 불법갈취

산업연수생을 모집, 한국에 파견하는 해외 송출업체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규정을 어기고 연수생들의 임금중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뜯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시사월간 WIN’ 1월호가 단독 입수,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인력송출업체인 J사의 서울 연락사무소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9월 대한상사 중재원에 “92년 2월 J사가 한국에 파견하는 근로자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급의 6.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했으나 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중재를 신청했다. 김씨는 이 중재 신청에서 또 94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근로자 1인당 수수료를 매월 80 달러씩 받기로 보충계약을 체결했으나 J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누적 액이 1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기협이 93년 정한 ‘산업연수생 수수료 규정’에 따르면 연수생은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해외 송출업체에 매달 관리수수료 30달러만 내도록 돼있어 김씨와 J사의 비밀계약

은 명백히 규정을 어긴 것이다. 김씨는 특히 산업연수생 업무를 총괄하는 중기협 연수협력단의 조기현(曹基鉉·64)단장에게 94년 8월 국내 연락사무소 허가를 조건으로 1천5백만 원을 주었다가 적발됐으나 중기협은 베트남 인력송출업체인 B사의 국내연락사무소 운영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협측은 “김씨가 당시 검찰에 적발되길 했지만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 사무소 운영을 허가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선정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96/12/20: 중앙)

IV.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근로자 1천명 넘어

광주, 전남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수가 1천 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 전남지회는 11월말 현재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이 광주 96개 업체 4백99명, 전남 1백9개 업체 5백6명 등 총 2백 5개 업체 1천5명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광주, 전남지역에 94년7월 83명이 처음 들어왔었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인이 4백4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백59명(한족 1백8명, 조선족 51명), 베트남인 1백21명, 방글라데시인 86명, 우즈베키스탄인 52명 순이다. 국가수로는 7명의 카자흐스탄과 5명의 네팔, 1명의 이란을 포함해 12개국에 이르고 있다. (96/12/24: 중앙)

V.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결성

부산지역 노동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상담과 의료 및 생활지원을 위한 모임을 결성, 활발한 활동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노동자교육협회(대표 정귀순, 36, 부산진구 전포4동 193)는 지난 10월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을 결성, 2개월 여 동안 부산·경남 지역 산업체에 고용된

필리핀 및 베트남 연수생들의 노동조건개선 및 복지활동을 펴고 있다.

이 모임에서 지난 2개월 동안 필리핀인 연수생들의 임금체불, 고용주 구타, 규정외 임업 등과 관련, 고충상담을 벌인 건수는 모두 1백여건.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정대표는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당한 대우가 급선무다”라며 “불법, 합법취업간의 임금격차 해소 등 제도적 모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만 누적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96/12/24: 부산)

VI.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유보

중소기업청은 한동안 입법추진 움직임을 보이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용허가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외국인 연수제도를 보완하는 선에서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금, 보너스 등 모든 면에서 내국근로자와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기존의 외국인 연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97/1/7: 중앙)

VII. 사기피해 조선족 산업연수생 우선 조정 검토

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국내인들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중국동포 구제의 일환으로 이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우선적으로 조정,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특히 중국정부가 연수생을 직접 선발, 송출하거나 지정 공공기관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 송출토록 함으로써 송출업체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초 한·중 명사국장 회의를 열어 양국간 사법적 협조와 신속한 대처 등 공조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라고 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한국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가산을 당진, 실의에 빠져 있는 중국동포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우선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동포들을 산업연수생으로 초청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중국동포의 추가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불법입국 알선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7/1/3:한국)

VIII. 한의사협, 외국인근로자에 의료서비스 (최고 5천원에 진료키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5,000원 이하의 비용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文濬典)는 2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한번 27% △두~세번 2.8% △자주 8.5%로 응답했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64%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저임금 또는 작업장안의 폭행문제 등으로 노조쪽의 도움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권보호(32%) 임금체불 해소(18.6%) 문화적응(23.8%) 등을 꼽았고 의료혜택(11.1%)이나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4.4%)를 지적한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다.

구미 가톨릭 근로자센터 관계자는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산업기술 연수생이 줄고 한국노동법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현지법인 연수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작업장안의 폭행 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7 한겨레)

IX. 구미공단 취업 외국인 노동자 55%가 최저임금 폭행경험도 40%

구미공단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중 절반이상이 30만원대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40%정도는 작업장 안에서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구미 카톨릭 근로자센터(소장 허창수 신부)가 최근 구미공단에서 일하는 산업기술연수생과 현지 법인 연수생 등 외국인 노동자 1백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급과 임금·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한달 평균임금이 △10만원대 25.8% △30만원대 35.4%인 것으로 조사돼, 30만원 이하가 절반이 넘는 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번 27% △두~세번 2.8% △자주 8.5%로 응답했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64%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저임금 또는 작업장안의 폭행문제 등으로 노조쪽의 도움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권보호(32%) 임금체불 해소(18.6%) 문화적응(23.8%) 등을 꼽았고 의료혜택(11.1%)이나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4.4%)를 지적한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다.

구미 가톨릭 근로자센터 관계자는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산업기술 연수생이 줄고 한국노동법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현지법인 연수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작업장안의 폭행 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7 한겨레)

<모임> 소식

- ◆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는 1명의 상근자와 1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일주일에 하루 출근하여 상담에서 외근에 이르기까지 사무국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국팀- 박순분(상근), 신경임(회사원), 송의진(재미동포), 윤향순(프리랜서), 이상연(승실대), 김재곤(뉴욕주립대), 장종철(서울대), 정현석(서울대), 현경용(서울대), 홍희표(서울대)
한국어강좌팀- 박정철(서강대), 김세진(서강대)
- ◆ 김포의 한 공장에서 손가락 3개가 불완전 절단되는 산재를 당하고도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는 바람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던 알제리 출신 노동자 가리엘이 지난 1월 28일 ‘이대목동 부속병원 사회복지과’의 도움으로 값싸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5일에는 ‘롯데복지재단’으로부터 15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받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 ◆ 본 <모임>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초급반은 오후 1시, 중급반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회망자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 ◆ 알립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주체 못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가능한 486이 상이면 좋구요. 현재의 286 컴퓨터는 너무너무 느려요.
- ◆ 지난 1월 29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대표 손광운 변호사)가 의정부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앞 법전빌딩 304호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모든 사안을 법률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처리해 나가며 소송비용 등 구조활동에 드는 비용은 무료(단,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검찰에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라고 합니다. 손 변호사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을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연락처 0351-878-4090)

판례소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 산업체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부 예규 등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연수생에 대해 이전에 발생한 장해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별9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황금화 씨(조선족산업연수생)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96구20224)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입은 황씨의 부상에 대하여 산업체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은 95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산업체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므로 소급보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리는 노동부 예규와 장관의 지시는 근거없이 산업체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위법한 내용으로서 무효’라며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위 노동부예규 시행일인 95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하여 산업체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지난 94년 8월경부터 외국인 산업체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일 해오던 중 같은 해 11월경 회사공장에서 실감는 작업을 하다가 머리카락이 실감는 기계에 말려 들어가 머리카락과 눈, 귀 위쪽의 두피부가 통령 벗겨지는 ‘두피부 결출상’을 입었으나 폐교가 노동부 예규를 들어 장해급여 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월30일자 법률신문에서)